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병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114
----------	-------

발의연월일 : 2025. 6. 27.

발의자 : 이병진 · 박용갑 · 강준현  
권향엽 · 송옥주 · 문대림  
송재봉 · 서삼석 · 이원택  
이상식 · 김윤 · 박상혁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수산분야, 도서지역 면세유 지원 등 도서지역 지원 부문 및 연안화물선 경유에 대한 면세 등 해운 분야에 대한 조세특례 제도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어민 지원 및 해양수산 산업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산 분야, 도서지역 지원 부문 및 해운 분야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3제1항, 제71조제1항, 제72조제1항, 제87조의2, 제88조의5, 제89조의3제1항, 제104조의30제1항, 제105조제1항, 제106조제1항, 제106조의2제1항, 제111조제1항 및 제111조의5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의3제1항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2027년 1월 1일”을 “2030년 1월 1일”로 한다.

제89조의3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4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및 제12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5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를 “제1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5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및 제12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1조의5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및 제12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5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9호의3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

1. ~ 13.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 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9호는 2025년 12월

① -----  
-----.  
제1호는 2028  
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5는 2026년 12월 31일  
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및  
제12호는 2025년 12월 31일까  
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 1. ~ 13. (현행과 같음)

② -----  
-----  
----- . -----  
----- 2028년 12월 31





에너지 · 환경 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유(이하 이 조에서 “경유”라 한다)에 대해 서는 교통 · 에너지 · 환경 세액을 리터당 56원 감면한다.	----- ----- -----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